

## 2001노1474 피고인 권영길 사건 판결의 요지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1노1474
피 고 인	권영길
항소 제기일	2001. 2. 5.
판결 선고일	2006. 1. 11.
쟁 점	<p>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p> <p>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1994. 11. 12.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노준)가 1995. 11. 11.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민주노총창립대의원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각 대회 참가자들이 위 각 대학 구내에 들어감에 있어 위 각 대학 당국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p> <p>3. 민노준이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에 참가한 근로자, 학생 등이 시위 도중에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 당초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소통에 극심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p> <p>4. 위 3의 경우 민노준의 공동대표인 피고인과 실제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시위참가자들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p> <p>5.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어 1997. 3. 1.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부칙 제3조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p>

	<p>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에도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해당 행위를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p> <p>6. 피고인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p> <p>7.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의 적정 여부</p>
결과 (주문)	원심 파기, 벌금 1,500만 원, 노역장유치(5만 원 1일 환산), 미통 111일 산입
참 고 조 문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3조의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5조

## □ 판결 요지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라고 함)의 공동대표로,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이라 함)의 공동대표 등으로 각 활동하면서

#### 1. 전노대 공동대표 000, 000 등과 공모하여

가. 1994. 6.경 전노대 산하 각 단위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을 위한 방안으로 각 단위 노동조합의 쟁의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쟁의발생 시기를 집중하게 하고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함)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하여 전노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여 대회를 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파업행동지침 등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4. 6.경 발생한 전기협,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대우기전 노동조합의 각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나. 1994. 6. 10.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개최한 임·단투승리 결의대회에 전노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현총련의 투쟁은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이며, 전노대 깃발아래 단결하여 연대투쟁하자'는 요지의 격려사를 함으로써 그 무렵 발생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동조합,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한국프랜지 노동조합의 각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2. 000, 000 등 민노준 간부들과 공모하여

199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민노준의 1995년 임금투쟁 방침을 각 단위 노동조합의 쟁의발생 시기 집중 및 임금협상과 사회대개혁 투쟁의 결합 등으로 정한 후 이를 민노준 산하의 각 단위노조에 시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5. 5.경 내지 같은 해 6.경에 발생한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시아자동차 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이대부속병원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각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3. 가. 000, 000, 000 등 전노대 공동대표와 공동하여

전노대 주관의 1994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경희대학교측으로부터 위 대학교를 위 대학의 개최장소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장소사용 불허통지를 받았음에도, 1994. 11. 12. 전노대 간부, 노동자, 학생 등 14,000여명과 함께 위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위 대학을 개최함으로써 위 대학교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000, 000 등 민노준 공동대표와 공동하여

민노준 주관의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노동자문화제 등을 개최함에 있어 연세대학교측으로부터 위 대학교를 위 각 대학의 개최장소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장소사용 불허통지를 받았음에도, 1995. 11. 11. 민노준 소속 근로자, 학생 13,000여명과 함께 위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위 각 대학을 개최함으로써 위 대학교 건조물에 침입하고,

다. 000, 000 등 민노준 공동대표 및 성명불상의 근로자들, 학생들과 공모

하여

1995. 11. 12. 위 3의 나항 기재 집회를 마친 후 민노준의 주최 하에 10,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광장까지 행진하는 행진시위를 하면서 도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 무단횡단,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을 감행하여 행진시위 구간의 자동차 교통을 방해하였다.

○ 쟁점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1994. 11. 12.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노준)가 1995. 11. 11.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민주노총창립대의원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각 대회 참가자들이 위 각 대학 구내에 들어감에 있어 위 각 대학 당국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3. 민노준이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에 참가한 근로자, 학생 등이 시위 도중에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 당초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소통에 극심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4. 위 3의 경우 민노준의 공동대표인 피고인과 실제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시위참가자들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어 1997. 3. 1.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부칙 제3조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면서 동시

에 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에도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해당 행위를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6. 피고인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7.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의 적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4. 15. 선고 89도2415 판결, 헌법재판소 1990. 1. 15.자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제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에 각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노대, 민노준의 각 공동대표들과 공동하여 1994. 11. 12. 경희대학교에서 전노대 주관의 '94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995. 11. 11. 연세대학교에서 민노준 주관의 민주노총창립대의원대회와 노동자문화제 등을 개최함에 있어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부터

각 명시적인 장소사용 불허통보를 받고도 위 각 대학교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범행 당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구체적으로 전노대, 민노대 측의 원심 판시 각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강의실과 강당을 일부 개방하고 전기,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노대나 민노준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소사용을 허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증거를 종합하면, 민노준이 주관한 이 사건 행진시위에 대하여 사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으나, 그 시위에 참가한 근로자, 학생 등이 시위 도중에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소통에 극심한 곤란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위참가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며, 비록 이 사건 행진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 측과 민노준 측과의 사이에 당초의 옥외집회신고 및 조건과 다소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진시위의 주최자로서 그 질서유지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시위 도중 참가자들의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결과로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행진시위 도중에 도로 전차선점거, 도로점거 연좌시위, 무단횡단 등을 감행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5.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어 1997. 3. 1.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률 제5244호'라고 함)은 부칙 제3조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신법에 의하여 구법을 개폐하면서 위 부칙 제11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형의 폐지 내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제45조의2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헌법재판소 1990. 1. 15.자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부칙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위

법률 제5244호가 시행되기 전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는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6.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전노대와 민노준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7.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10년 전에 범한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를 범한 후에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244호가 새로이 제정되면서 당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등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상급 노동조합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법률 제5244호가 1997. 3. 13. 폐지되고 같은 날 새로이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도 마찬가지로) 전노대, 민노준에서 비롯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그에 가입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가벌성이 상당히 약화된 점, 피고인과 같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를 범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실시된 2004년 총선에서 지역



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 □ 판결의 의미

- 제3자 개입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각 위배되지 않고, 법률 제5244호가 부칙 제3조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법률 제5244호가 시행된 이후라도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가 적용된다는 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약 10년 전에 범한 것으로서 그 중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는 현재 그 가벌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범행 과정에서 폭력행사나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임.